황연옥 칼럼

시인, 교사

성장과 성숙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들녘의 색깔이 아름답고 평화롭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벼를 추수하는 콤바인 소리가 들녘을 울리고 농부들의 얼굴에도 수확의 기쁨이 가득하다.

지난여름, 길옆에 있는 밭을 지나다가 푸르게 잘 자란 콩잎을 낫으로 베어내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의아하게 생각하여 물어보았더니 서리태가 웃자라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 수확이 많이 나도록 웃자란 싹을 베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 그렇구나!'

문득, 몇 년 전 담임하였던 한 아이가 생각났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데 생각이 제 또래에 못 미쳐 항상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외동이라 어릴 적부터 엄마가 모든 걸 다 해 주다보니 아이가 의타심이 많아져 매사를 스스로 하려하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며 부모 잘못이라고 크게 상심하여, 함께 아픔을 나누며 아이를 보살펴주던 일이 생각났다.

어찌 그 아이 뿐이랴. 요즘 아이들은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하다. 예전에 가르치던 아이들에 비해 키도 크고 용모도 말끔한데 참을성이 부족하고 인내심도 약하다. 이런 아이들을 교단에서 가끔 만나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전을 찾아보면 '성장'의 뜻은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점점 커지는 것,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으로 나와 있고, '성숙'의 뜻은 "초목의 열매가 잘 익고 생물이 충분이 발육되며, 어떤 현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경제와 문화가 선진국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거리마다 자동차가 가득하고 가정마다 편리한 전자제품과 최첨단 인터넷을 생활 속에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지만 사람들이 경제와 문화 수준에 걸 맞는 인격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주말이면 가끔 차를 운전하고 외곽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아연실색할 때가 있다. 앞 차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를 목격할 때이다. 가격이 아주 비싼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앞차 운전자 뒷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

갑작스런 차선위반이나 끼어들기를 곡예사처럼 즐기는 운전자들을 보며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든다. 경제적인 부유함에 앞서 지켜야할 규칙이나 공중질서를 준수하는 자세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규칙은 어리숙한 사람들이 지키고 약삭빠른 사람은 적당히 피해가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성장은 했어도 성숙에 이르지 못한 어설픈 생각이다.

봄이 되면 과수원에서는 더 맛있고 질 좋은 과일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다. 잘려나가는 가지를 보면 아까운 생각도 들고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주인은 아까운 마음을 접고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버린다. 겉으로 보기에 가지가 아무리 실하다 해도 결실에 걸림돌이 되는 가지라면 잘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다. 내 삶에서 진정한 성숙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추수 하는 계절, 곡식을 거두어 들여 군데군데 휑하게 비어 있는 논벌이 바라보이는 들길을 걸으며,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 이전서류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이전 미루던 중 사고 났을 때

문〉 저는 중고차매매센타에 의뢰하여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갑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차일피일 미루며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에는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을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 을은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갑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한다.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운행지배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판례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귀하는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여겨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지역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기구독이 고성신문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